

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5 - 호

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5년 11월 27일
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의 단서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 제3조에서 동일한 사항을 중복 열거하고 있어 불필요한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의 단서와 중복 열거 사항인 안 제3조의 각 호 부분을 삭제(안 제3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(참조 : 행정지원과장,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, 01071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(☎ 02-901-6332, FAX 02-901-6319, E-mail : firefly77@gangbu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